

의안번호	제605호
의결 연월일	2014년 1월 24일 (제326회)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4년 1월 8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605
----------	-----

제출연월일 : 2014년 1월 8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 대통령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2013.12.12.제정)」으로 상향하여 반영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현행조례 붙임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2.7.16. 시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3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1995. 9. 22, 2010. 12. 31>

②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 8. 7. 2010. 12. 31>

제3조(임용권자)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10. 12. 31>

②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3, 2010. 12. 31>

제4조(임용자격) ① 삭제 <2010. 12. 31>

② 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1>

③ 제2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8. 7>

제5조(임용절차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

2.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3.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초빙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4.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7. 16]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2. 7. 16]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 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3. 13>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과 충청북도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00. 3. 13, 개정 2010. 12. 31>

② 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예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③ <삭제 1998. 11. 27>

④ <삭제 1998. 11. 27>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본조의조 신설 <2010. 12. 31>]

제9조 삭제 <2010. 12. 31>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98. 11. 27, 2009. 8. 7, 2010. 12. 31>

1. 삭제 <2012. 7. 16>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 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7. 16]

[제목개정 2012. 7. 16]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전조개정 2009. 8. 7]

제11조의2 <삭제 2009. 8. 7>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7>

③ 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개정 1998. 11. 27, 2009. 8. 7, 2010. 12. 31>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전조개정 2009. 8. 7]

제12조의2(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의조 신설 <2010. 12. 31>]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8. 7, 2010. 12. 31>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 7. 30>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상당계급	임용자격
3급상당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4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5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7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급상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p>※ 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 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 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 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 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 (2013.12.12. 시행)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13.12.12. 시행)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